



RCEP의 주요내용 (Briefing on RCEP)

2022. 3. 3.

고 희 채

kotra
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

➤ Contents

I RCEP 개요

II RCEP 주요내용

<참고> FTA 해외활용지원센터

I

RCEP 개요

1. RCEP 개요(1)

▶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

개요

◆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

- 아세안 10개국, 한·중·일·호주·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참여

* RCEP 對세계 비중('20 IMF) : △GDP 26.1조달러(31%), △인구 22.7억명(30%), △무역규모 5.6조달러(32%)

경과

◆ '12.11월 협상 개시 이후, 총 31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8년만에 타결

◆ '19.11월 협정문 타결, '20.11월 최종 서명

◆ 협정상 요건*을 만족한 10개국**은 22.1.1일 발효

* 과반 (非아세안 5개국 中 3개국/ 아세안 10개국 中 6개국)이 비준서 기탁 완료 → 기탁 후 60일

** (非아세안)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/ (아세안) 싱가포르, 브루나이, 캄보디아, 라오스, 태국, 베트남

-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('21.12.3일)한 60일 이후인 '22.2.1일부터 적용

1. RCEP 개요(2)

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

의의

- ◆ 세계 최대 FTA를 통한 역내 자유화 제고 및 경제회복 도모
 - 전세계의 자유주의 확산 도모
 - 기존 FTA대비 추가개방된 역내국가로 교역 확대
- ◆ 아세안과의 협력강화 등 신남방정책 가속화
 - 對아세안 상품 시장 추가개방, 게임·영화 등 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상호 교류·협력 증진 기대

* 지난 30년간 한-아세안 교역 30배, 투자 40배, 상호방문객수 40배 증가



II

RCEP 주요 내용

2. RCEP 주요내용(상품)

① 상품

- ◆ 既체결 FTA(한-아세안 등) 업그레이드, 일본과 신규 FTA 효과
- ◆ 우리 공산품(對日), 농수산물(對아세안, 中 등)의 민감성 보호



對 일본

- ◆ 자동차, 기계 등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제외, 개방 품목도 장기(10~20년) 및 비선형철폐 다수 활용해 보호
- 양국의 상호 민감성과 상이한 무역 구조를 감안하여 RCEP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양허



對 아세안

- ◆ RCEP에서 既체결 FTA 대비 상당 수준의 추가개방을 확보 → 전반적 자유화 수준을 90% 이상으로 제고
- 아세안은 우리 핵심품목(자동차·부품, 철강 등)뿐만 아니라 섬유,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



농·수·임산물 분야

- ◆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제외로 보호, 일부 개방 품목도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
- * (양허제외) 쌀, 고추, 양파, 사과, (관세감축) 녹용, 타피오카(냉동), 합판 등

2. RCEP 주요내용(서비스)

② 서비스

- ◆ 한-아세안 FTA('07년) 대비 아세안 국가의 문화 콘텐츠·유통·물류서비스 등 시장개방 상당부분 확대
- ◆ △서비스 무역 촉진을 위해 추가 자유화 요소* 도입, △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 한-아세안 FTA 대비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**, △ 투자자-국가 분쟁 해결절차는 동 제도 개선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, 발효 후 2년 내 논의 개시 합의

* 각 국가별로 일부 분야에 대해 최혜국 대우 의무(제3국과의 협정에서 더 나은 대우 부여시 역내국에게도 부여)와 래치(자유화 후퇴 방지) 메커니즘 적용

**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술이전 강제 또는 로열티 상한 제한 등의 요건 부과 금지

문화 콘텐츠	· (태국) <u>교육용 온라인게임</u> 외자지분제한(49%)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
	· (필리핀) <u>애니메이션, 음반녹음, 라디오·TV</u> 등 외자지분제한(49%)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
	· (인니) <u>영화 제작·배급·상영, 음반제작, 공연</u> 등 외자지분제한(51%)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
유통· 물류	· (태국) <u>자국생산상품 소매, 의약품 등 도매</u> 외자지분제한(49, 70%)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
	· (인니) <u>식음료, 의류 분야 도매·프랜차이즈</u> 외자지분제한(51%)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

2. RCEP 주요내용(규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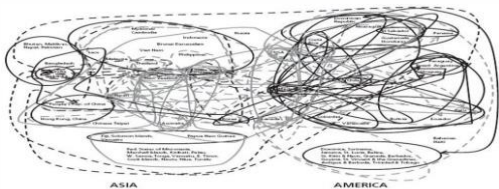
③ 규범

- ◆ 단일 원산지 기준 마련, 증명방법 다원화 등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
- ◆ 지적권 보호 강화·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등 규범 선진화 도모

원산지

- 역내(15국) 교역에 적용되는 단일한 원산지 기준의 도입
- Spaghetti Bowl 효과 완화 및 FTA 활용 편의성 제고

* [기존] RCEP 참여국간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기준 적용 → [변경] 단일 기준 적용



지재권

- 「저작권·상표·특허 관련 실체적 권리·집행규범 규정

→ 한류 콘텐츠가 확산 중인 RCEP 역내에서 지적권 보호

* [기존] 지적권 챕터 없거나(한-아) 상대적으로 수준 低(한-싱) → [변경] 온라인 지적권 침해에 대한 민·형사 구제, 악의적 상표 선점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 등 규정

전자상거래

- 한-아세안 FTA에 없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하여 안정적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

*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망 (Google & Temasek) : ('16) 74억불 → ('25) 878억불



<참고>
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소개

<참고> FTA 해외활용지원센터

◆ RCEP 역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충 및 현지 지원 활성화

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현황

- 총 9개국 15개 센터 (KOTRA 무역관 內 설치, RCEP 역내 12개소)
 - 중국(5), 베트남(2), 인니(1), 태국(1), 필리핀(1), 캄보디아(1), 호주(1) / 인도(2), 중남미(1)
 - FTA 발효 대비 캄보디아('21.6월) 및 호주('21.12월)에 선제적으로 센터 개소
- 해외 바이어 및 우리진출 기업 대상 현지 지원
(FTA홍보, 활용상담, 기업 애로파악 및 해소)

감사합니다

kotra